

1. 제안이유

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 개정예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
근거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국민주택채권 매입 근거 규정 변경(별표 부표)

○ 부동산 유상승계취득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
없는 신규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의
매입 관련 근거 규정을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부표 제15호가목1)가)의 세부범위란 전단 중 “제1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2호”를 “제1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가표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신규분양 공동주택의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를 모집공고한 신규분양 공동주택(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.)의 경우에 관하여는 별표 부표 제15호가목1)가)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